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10.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교원이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체에서 요청하는 산업자문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란 교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교원”이란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
3. “산업자문료”란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본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산업교원) 산업교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된다.

제4조(산업자문) ① 산업자문 분야는 기술 분야, 경영 분야,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 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산업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신청하면 산업교원을 배정하고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④ 산업교원은 산업자문이 완료되면 [별지 제2호] 산업자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① 산업체 등은 산업자문 계약에 따라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자문료 배분 및 지급)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80%, 산학협력단에 20%의 비율로 배분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료를 납부하였을 때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해당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실적평가반영)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임용 및 재계약 임용시 실적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3-1-36-2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산 업 자 문 신 청 서

지원분야 (해당분야선택)	기술 / 경영 / 디자인 / 컨설팅				
신청기관(업체)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자문기간	. . . ~ . . . (총 시간)		산업자문료	(원)	
산업자문 주제					
산업교원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	성명	소속/부서	연락처	참여율(100%)	비고
현재의 문제점					
산업자문 희망사항					
성공시 기대효과					
기타제안					

위와 같이 산업자문을 신청합니다.

.

신청기관:

대표:

(인)

(사전에 선정된 경우) 전주대학교 산업교원:

(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산 업 자 문 결 과 보 고 서

지원분야 (해당분야 선택)	기술 / 경영 / 디자인 / 컨설팅		
신청기관(업체)명			
자문일시(기간)	. . . ~ . . . (총 시간)	산업자문료	(원)
산업자문 주제			
자문 내용 및 결과			
위의 산업자문 결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대표:	(인)

위와 같이 산업자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 .

산업교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붙임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